

영등포구의회
제213회 임시회

『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3. 22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93호로 2019년 3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마을자치센터의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□ 위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
관련사무

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

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○ 주민자치 분야

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-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마을자치센터 운영인력(안): 총 11명
 - 센터장 1명, 마을팀 3명, 자치팀 2명, 동자치지원관 5명(5개 시범 동별 각1명)

- 운영방법: 전문기관 선정 민간위탁운영
 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

- 소요예산(2019기준): 금406,777천원(시비) (단위:천원)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181,655	92,347	21,843	67,465	6월~12월
자치	225,122	167,703	4,084	53,335	
계	406,777	260,050	25,927	120,800	

- 관련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원센터 설치), 제24조(관리 및 운영)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에 따라,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하여,
- 현행 단체형 마을생태계사업단과 신설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마을과 주민자치회가 혼합된 ‘민간위탁형 마을자치센터’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,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 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- 제22조(지원센터 설치)**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4조(관리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-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3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교육,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4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<개정 2013.12.12>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